

#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규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69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3. 27.

발의자 : 안규백 · 이용득 · 전현희  
전혜숙 · 이수혁 · 신창현  
김진표 · 권미혁 · 김상희  
박정 · 김병기 · 윤후덕  
김성수 · 설훈 · 임종성  
송옥주 의원(16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, 의무 위반 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.

현행법은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등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.

그런데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 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.

이에 별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 
별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, 직무상  
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 
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  
고자 함(안 제42조제4항).
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 
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  
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4항 중 “제13조를 위반한 자”를 “제13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 
를 위반한 자”로, “1천만원”을 “2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2조(별 칙) ① ~ ③ (생 약)</p> <p>④ <u>제13조를 위반한 자는 2년</u>  <u>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</u>  <u>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</p>	<p>제42조(별 칙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제13조에 따른 비밀준수의</u>  <u>무를 위반한 자-----</u>  <u>-----2천만원-----</u>  <u>-----.</u></p>